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승재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75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1년 10월 13일
발 의 자: 노승재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경우, 김기대, 김인제,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
박순규, 송도호, 송명화,
송아량, 양민규, 오중석,
이정인, 장상기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7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「지방자치법」
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
「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」
「서울특별시 고령화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노인체육의 진흥)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·운영
2. 노인체육 관련 국내·외 교류 및 대회·행사 등의 개최
3.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
4. 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
5.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
6.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
7.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17조의2(노인체육의 진흥) 시장</u> <u>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</u> <u>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</u> <u>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</u> <u>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</u> <u>· 운영</u> <u>2. 노인체육 관련 국내·외 교</u> <u>류 및 대회·행사 등의 개최</u> <u>3.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</u> <u>지·관리</u> <u>4. 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의</u> <u>연구·개발</u> <u>5.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</u> <u>식개선</u> <u>6.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</u> <u>회 조직의 육성</u> <u>7.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</u> <u>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|

문서번호

2021092800000002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노승재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9.28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의2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※제17조의2 제2항에서 노인체육 관련 국외 교류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,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17조의2에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 노인체육시설은 매년 2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
- 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는 체육시설 1개소당 1,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2022년~2026년)

라. 방법

-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17조의2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복지정책실의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4,895,000천원(연평균 979,000천원)
-총 비용 = 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·운영비+노인체육 관련 국내 대회·행사 개최비+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비+노인 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+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비+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비용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(2022년) | 2차년도 (2023년) | 3차년도 (2024년) | 4차년도 (2025년) | 5차년도 (2026년) | 합 계 |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입 | - | - | - | - | - | - | |
| | 소계 (a) | - | - | - | - | - | |
| 세출 | 제17조의2 제1항 (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 · 운영비)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1,500,000 |
| | 제17조의2 제2항 (노인체육 관련 국내 대회·행사 개최비) | 50,000 | 50,000 | 50,000 | 50,000 | 50,000 | 250,000 |
| | 제17조의2 제3항 (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비) | 423,000 | 423,000 | 423,000 | 423,000 | 423,000 | 2,115,000 |
| | 제17조의2 제4항 (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) | 2,000 | 4,000 | 6,000 | 8,000 | 10,000 | 30,000 |
| | 제17조의2 제5항 (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비) | 80,000 | 80,000 | 80,000 | 80,000 | 80,000 | 400,000 |
| | 제17조의2 제6항 (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 육성비) | 40,000 | 80,000 | 120,000 | 160,000 | 200,000 | 600,000 |
| | 소계 (b) | 895,000 | 937,000 | 979,000 | 1,021,000 | 1,063,000 | 4,895,000 |
| 총비용(b-a) | 895,000 | 937,000 | 979,000 | 1,021,000 | 1,063,000 | 4,895,000 | |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무관 이해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제17조의2에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업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·운영비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관련강좌의설치·운영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연간 비용 ≍ 300,000천원

※ 2021년 관광체육국 가족스포츠강습프로그램 운영비 300,000천원

나. 노인체육 관련 국내 대회·행사 개최비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관련국내대회·행사개최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연간 비용 ≍ 50,000천원

※ 2021년 관광체육국 어르신 축구대회개최 지원비 50,000천원

※ 2019년 복지정책실 어르신 생활체육경연대회 지원비 50,000천원(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미시행)

다.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비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시설의설치및유지·관리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연간 비용 ≍ 423,000천원

※ 2021년 관광체육국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지원비 1개소당 평균 211,500천원

라. 노인 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관련프로그램연구·개발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노인 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·개발비용 ≍ 30,000천원

· 1차년도 = 2,000천원

= 1,000천원 × 2개소

· 2차년도 = 4,000천원

= 1,000천원 × 4개소

- 3차년도 = 6,000천원
= 1,000천원 × 6개소
- 4차년도 = 8,000천원
= 1,000천원 × 8개소
- 5차년도 = 10,000천원
= 1,000천원 × 10개소

※ 2021년 복지정책실 장애인체육시설 프로그램지원비 1개소당 1,000천원

마.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비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에대한홍보및인식개선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연간 비용 ≒ 80,000천원

※ 2021년 복지정책실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사업비 80,000천원

바.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 육성비용 = $\sum_{i=1}^5$ (연간노인체육관련단체와동호회조직육성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2년~2026년)

-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 육성비용 ≒ 600,000천원

- 1차년도 = 40,000천원
= 20,000천원 × 2개소
- 2차년도 = 80,000천원
= 20,000천원 × 4개소
- 3차년도 = 120,000천원
= 20,000천원 × 6개소
- 4차년도 = 160,000천원
= 20,000천원 × 8개소
- 5차년도 = 200,000천원
= 20,000천원 × 10개소

※ 2021년 관광체육국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 1개소당 20,000천원